



제 418 국회 (정 기 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918호)

2024.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개요	2
2. 제21대국회 심사경과	6
3. 개별 법률 검토	7
(1)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7
(2) 농업협동조합법	18
(3) 농약관리법	24
(4) 동물보호법	31
(5) 수의사법	36
(6) 식물방역법	41
(7)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46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김도읍의원
2. 제 출 일 : 2024. 8. 16.
3. 회 부 일 : 2024. 8.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 · 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 · 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Ⅲ. 검토의견

1. 개 요

개정안은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등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에 따른 면허·등록이나 자격의 취득 또는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 각 개정안 주요 내용 】

소 관	법률 제명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 삭제 대상
농림축산 식품부 (7건)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공동소관)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원 및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
	농업협동조합법	임원
	농약관리법	농약 제조업·수입업·원제업 및 판매업 등록
	동물보호법	맹견사육허가
	수의사법	수의사
	식물방역법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자 등록 및 축산계열화사업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개정대상 직역별 인원 】

(누적기준)

근거법률	직업 등	인력현황(명)			시험·교육 운영기관	시험 주기	담당과
		'21	'22	'23			
농림수산물 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업무집행조합원 임원*	-	-	372	-	-	농업금융 정책과
	업무집행조합원 투자전문인력**	-	-	183			
농업협동조합법	농축협임원	13,416	13,236	13,096	-	-	농업금융 정책과
농약관리법	제조업자	64	69	68	-	-	첨단기자 재종자과
	원제업자	26	29	30			
	수입업자	107	113	112			
	판매업자	5,539	5,611	5,648			
동물보호법	맹견사육자***	-	-	-	지자체	수시	동물복지 정책과
수의사법	수의사	21,085	21,661	22,198	농림축산 검역본부	연 1회	반려산업 동물의료팀
식물방역법	수출입목재 열처리업자	714	754	787	-	-	검역정책과
축산계열화 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 사업자	208	230	253	-	-	축산경영과

*, ** 농식품투자조합을 운영하는 업무집행조합원(운용사)의 임원 및 투자전문인력 수(23년기준 누적치)

*** '24년 4월 맹견사육 허가제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24. 9. 22. 제출

2013년 7월 정신장애인·노인 등의 자기결정권 존중 및 사회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민법」상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제도로 개편되었음.

성년후견인 제도는 기존 금치산·한정치산자의 경우 일률적으로 무능력자로 취급되어 행위능력을 획일적·포괄적으로 배제받던 것과 달리, 피성년·

피한정후견인의 자기결정권과 잔존능력¹⁾을 존중하면서, 행위능력을 개별적·한정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보다 유연하게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임.

【 「민법」 상 행위능력 제도 변화 】

종 전		개 정
금치산자		피성년후견인
(대상)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 (행위능력)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취소 가능	→	(대상)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행위능력) 원칙적 취소 가능(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행위를 정한 경우 등은 예외)
한정치산자	→	피한정후견인
(대상) 심신박약 또는 재산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 (행위능력) 한정치산자의 모든 법률행위에 후견인 동의 필요		(대상)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 (행위능력) 가정법원이 별도로 정한 행위는 한정후견인 동의 필요

이러한 민법 개정으로 기존의 한정치산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됨.

민법 제13조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와 범위를 정할 수 있고,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²⁾ 하였을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 하도록 함.

1) 피성년후견인이 여전히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율성의 범위로 일상생활 능력, 법적결정능력, 재정관리 능력, 의사결정 능력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함.

2)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제외

「민법」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기존의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각종 자격·영업 등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던 개별 법률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단순히 용어만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치환하여 정비하는 경향이 발생하였음.

일괄적으로 용어정비 방식으로 개정된 현행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피후견인에 해당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또는 임원의 선임 등 광범위한 분야의 직무에서 피후견인을 배제시키고 있는데,

이는 피후견인의 잔존능력을 인정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 국민들이 성년후견 제도의 이용을 기피하게 되어 개편된 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또한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통일된 기준 없이 정비가 추진됨에 따라 유사 자격·영업 간 결격사유의 불균형도 발생시키는 측면이 발생하였음.

따라서 결격조항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원칙적으로 삭제하고 직무수행 능력을 개별법상 규정된 실질적 기준을 통해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려는 본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이하에서는 개별 법률을 대상으로 ① 자격시험, 인허가 요건, 그 밖의 검증수단을 통해 사전에 직무수행능력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심신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해임·해촉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③ 유사한 직역의 입법례는 어떠한지 ④ 공익 관련성이 높은 직역의 경우, 결격사유에서 피한정 후견인을 전면 삭제할 경우 규제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자격 요건을 보완하거나 대체 결격사유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여부를 각각 검토하기로 함.

2. 제21대국회 심사경과

제21대 국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0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26344호, 2024. 01. 23.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은 상정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되었음.

3. 개별 법률 검토

(1)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현행법은 농식품투자조합 등록의 결격사유로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원 및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와 함께 피한정후견인인 경우도 포함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 중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조(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등) ① 제11조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에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하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등) ① -----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원 및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	3. ----- ----- -----
<u>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u>	<u>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u>
나. ~ 바. (생략)	나. ~ 바. (현행과 같음)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나.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민간투자자 및 농식품모태펀드의 자산을 관리해야 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역할을 고려하면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원 및 투자심사업무 전담인력에 피한정후견인을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임.

2)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식품모태펀드 투자관리전문기관)에서도 피한정후견인의 적기 투자 실패 등 우려되며, 정책펀드 운용의 공익성을 고려하였을 때 결격사유를 현행과 같이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다. 검토의견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은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투자관리전문기관, 농·수협 조합 및 중앙회 등이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림수산식품경영체(농식품경영체)에 대하여 투자를 하는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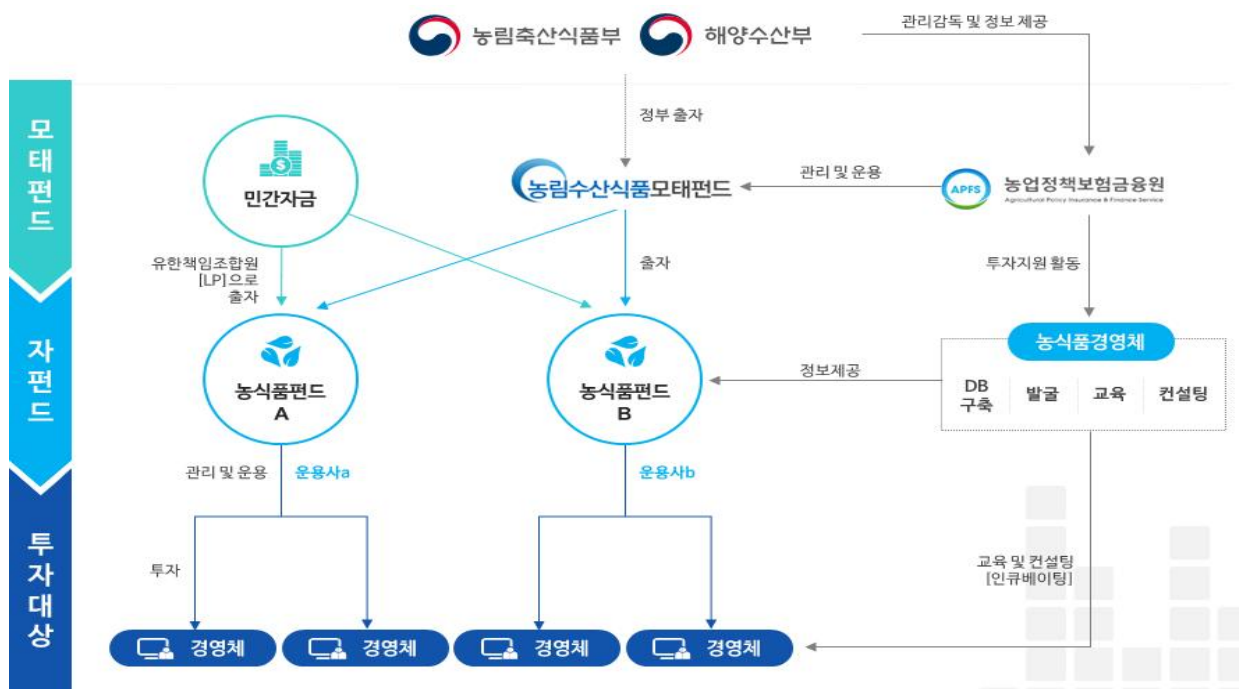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농식품투자조합의 조합원은 업무집행조합원(GP: General Partner)과 유한책임조합원(LP : Limited Partner)’으로 구분됨.

업무집행조합원(GP)이란 농식품투자조합의 조합원 중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으로 책임을 지는 조합원으로, 투자결정, 조합운영, 조합손실에 대한 책임, 투자수익 분배 등의 역할을 수행함. 즉, 농식품펀드·수산펀드를 관리·운용하는 ‘민간운용사’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될 수 있음(단, 업무집행조합원 중 1인은 ①~④ 해당하여야 함)

【참고1: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

- ① 벤처투자회사, ② 신기술사업금융업자, ③ 투자관리전문기관,
- ④ 농·수협 조합 및 중앙회,
- 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 ⑥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 ⑦ 보험회사, ⑧ 은행

【참고2: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출자 및 투자구조】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금융정책과 24.9.13.제출

한편, 현행법 제13조는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한 자는 농식품부장관 또는 해수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원 및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이하 “투자전문인력”)이 피한정 후견인 동일 경우에는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농식품투자조합 등록시 결격사유에서 업무집행조합의 임원 및 투자전문인력이 피한정후견인인 경우를 삭제하려는 것임.

※ 관련규정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2.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3. 투자관리전문기관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가. 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 금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조합은 그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하 “유한책임조합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그 중 1인은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관련규정**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은행법」에 따른 은행

③ 제1항에 따른 조합에 손실이 있을 경우 업무집행조합원과 투자관리전문기관은 각각 출자한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그 손실금을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잔여손실금이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이 그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손실금을 부담한다.

④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모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을 1인으로 하고,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등) ① 제11조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에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하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출자금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다만, 출자금은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출자할 수 있다.
2. 존속기간이 3년 이상일 것
3.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원 및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

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바. 제3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3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농식품투자조합의 취소 당시 임직원이었던 자(그 등록취소 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관련규정

4. 그 밖에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생략)

1) 사전검증 및 사후퇴출 규정 여부

현행법은, 업무집행조합원 임원 및 투자전문인력의 선임절차나 자격요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해임·해촉에 관한 사항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아니함.

다만, 현행법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이 될수 있는 자(참고1 따른 벤처투자회사 등)는 각각 그 설립 근거법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포함한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거나, 총회의결 등 임원의 선임 및 해촉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농식품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의 개별법상 임원 등 결격사유 여부】

업무집행조합원(GP)가 될 수 있는 자	개별 설치근거법률에 따른 결격사유 여부		근거법률
	임원	투자전문인력	
벤처투자회사	○	-	벤처투자법
신기술금융업자	-	-	여신전문금융업법
투자관리전문기관(농금원)	-	-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농·수협 조합 및 중앙회	○	-	농협법및 수협법
상법상 유한회사 등	-	-	상법
투자매매·투자중개·집합투자업자	○	-	자본시장법
보험회사	○	-	보험업법
은행법은행	○	-	은행법
투자조합등록시 임원 등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 재확인	○	○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따라서 이 법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설립 단계에서 업무집행조합원 임원의 결격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여도 개별 법률에 따라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를 적용받거나, 임원의 선임·해촉 절차를 통하여 사전자격검증 또는 사후퇴출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한편, 펀드매니저를 비롯한 투자전문인력³⁾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와 관련한 개별적 설치근거 법률에서도 별도로 결격사유를 규정한 바 없고, 현행법에서만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 제13조에서는 ① 피성년·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 받은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끝난지 5년 이상이 지나지 않은 자 ④ 금융관련 법령위반으로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5년 이상이 지나지 않은 자 ⑤ 투자조합 등록취소시 책임있는 임직원이었던 자 등은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원 또는 투자전문인력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

해당 직무 수행 중에 결격 조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도 해당 임원 또는 투자전문인력을 3개월 이내에 교체하지 아니하면 투자조합의 등록이 취소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14조에서 농식품투자조합의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위자에 대한 벌칙, 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3) 업무집행조합원에서 투자기업의 발굴, 심사, 사후관리 등의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으로서 업무집행조합원의 관리업무(투자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 이외 경영기획 및 경영관리 등의 업무)를 겸직할 수 없음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일부 간접적인 퇴출절차는 둔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음.

2) 유사입법례

현행법과 유사한 법률로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⁴⁾을 들 수 있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해당 법률에 따라 ‘벤처투자 회사’, ‘창업기획자’가 등록할 때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원 또는 임원에 대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이들이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고 등록하는 단계에서는 별도의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를 두지 아니하고 있음.

반면, 현행법은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하고 등록하는 단계에서 임원 및 투자전문인력에 대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한편, 투자전문인력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만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결격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4)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대상 법안이 아님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될 수 있는 자의 개별법상 임원 등 결격사유 여부】

업무집행조합원(GP)가 될 수 있는 자	개별 설치근거법률에 따른 결격사유 여부		근거법률
	임원	투자전문인력	
벤처투자회사	○	-	벤처투자법
신기술금융업자	-	-	여신전문금융업법
한국벤처투자	-	-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창업기획자	○	-	벤처투자법
상법상 유한회사 등	-	-	상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투자회사	-	-	-
그 밖에 고시하는 자	-	-	-
투자조합등록시 임원 등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 재확인	-	-	벤처투자법

※ 관련법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창업기획자의 등록)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창업기획자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생 략)

2. 제1호 각 목의 자의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임원의 직무에 상응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37조(벤처투자회사의 등록) ① (생 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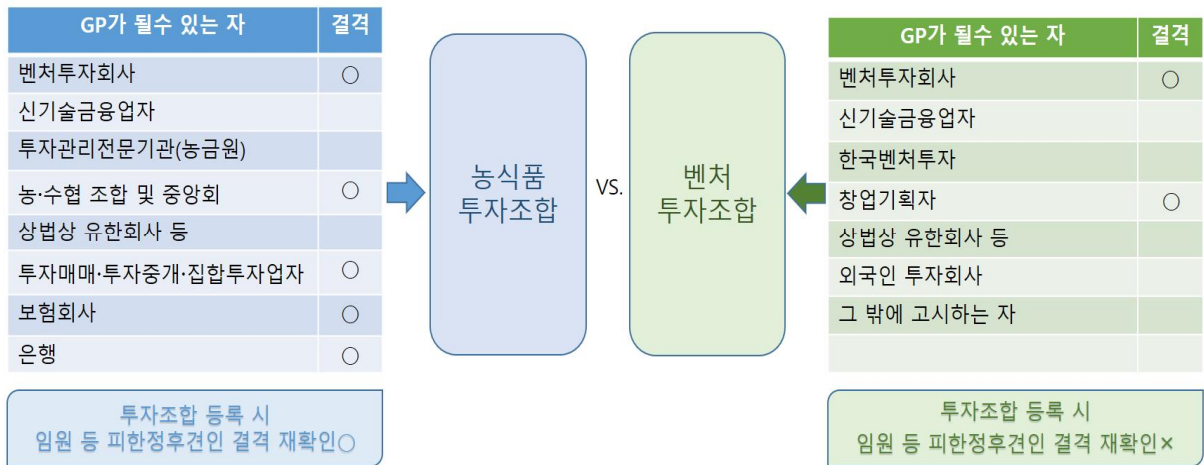
② 제1항에 따라 벤처투자회사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생 략)

2. 임원(주식회사 및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임원,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을 말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차목과 카목은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또는 업무집행자에게만 적용한다.

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농수산물투자조합법과 벤처투자법 비교 】



3) 공익관련성 등

농식품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원 및 투자전문인력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농식품투자조합은 농림수산물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자금과 민간자금을 매칭하여 운용되는 투자조합으로서, 높은 공공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투자조합 등록 단계에서 농식품부가 그 적격성 여부를 관리할 수단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⁵⁾.

또한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원 및 투자전문인력이 투자조합의 운용과정에서 투자결정, 금전차용 등의 중요 법률행위를 하게 될 때 한정후견인의

5)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법」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이 될 수 있는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에 대한 등록·관리·등록취소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농식품부는 「농수산물투자조합법」에 따라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는 ‘벤처투자회사’ 등에 대한 등록·관리 권한이 없음.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적시 투자가 어려워 질 수 있고, 중요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동의 없이 하였을 시 취소될 수 있어 농식품투자조합의 안정적 운영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유사입법체인 벤처투자법에서는 투자조합 등록시 임원 또는 투자전문인력에 대해 별도의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바, 투자활성화와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 농식품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을 구별할 차이가 없다는 점은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농업협동조합법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조합 및 농협중앙회) 임원의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과 함께 피한정후견인을 포함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 중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2. <u>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u>
3. ~ 12. (생략)	3. ~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나. 관계기관·단체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조합대표권을 가진 임원의 역할을 고려할 때 법률행위의 제약이 있는 피한정후견인이 임원이 되는 것이 부적절하므로 현행과 같이 결격사유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에서의 임원의 역할, 임원 선출 시 별도 직무수행능력 심사 규정 부재, 높은 수준의 책임 요구 등에 따라 피한정후견인 조항 삭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 검토의견

1) 사전검증 및 사후퇴출 규정 여부

현행 「농협협동조합법」 제35조제1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업협동조합 임원을 선출·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농협협동조합법」 제53조는 농업협동조합 임원에게 충실히 직무를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직무 수행 시 법령·정관 위반 행위 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 등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됨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농업협동조합 임원의 선출 및 해임 규정은 농업협동조합 임원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검증의 수단 및 사후퇴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관련규정

「농업협동조합법」

제35조(총회의결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 4. (생략)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

6. ~ 11. (생략)

② (생략)

제53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지역농협의 임원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및 정관의 규정을 지켜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지역농협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라면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한 이사 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의사록에 적혀 있지 아니한 이사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 임원이 거짓으로 결산보고·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지역농협이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도 제2항 및 제3항과 같다.

※ 제35조와 제53조는 지역축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준용됨.

2) 유사입법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로 피한정후견인을 규정하고 있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역시 위와 유사한 사유로 2021. 3. 21. 개정되어 피한정후견인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임원이 되는 것이 가능해졌음

※ 유사입법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3조(정관)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 10. (생략)

11. 임원·대의원의 정수·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③ (생략)

제2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 2. (생략)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② (생략)

제4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

3. ~ 8. (생략)

②·③ (생략)

다만, 현재 농업협동조합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원 및 5대 상호금융기관(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피한정후견인이 포함되어 있음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유사입법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구별수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와 제13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2.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산림조합법」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와 제13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2.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유사입법례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임원 등의 자격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새마을금고법」

제21조(임원의 결격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른 상근이사는 제1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한편, 2024.7.24. 정부가 제출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02193호)은 산림조합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특히 농업협동조합의 경우 농협은행 위탁 업무, 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 보험계약 체결 대리(「보험업법」 적용) 등 다양한 성격의 법률행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산림조합 등 다른 조합에 비해 보다 엄격한 결격사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추가로 제시하였음.

3) 공익관련성 등

농업협동조합 운영을 위한 금전차용, 부동산거래 등 법률행위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중요 법률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다양한 법률관계 형성이 필요한 조합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과, 조합이 신용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어 타인의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결격사유 삭제 고려 시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3) 농약관리법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현행법은 농약 제조업·원제업·수입업 및 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과 함께 피한정후견인을 포함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 중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u>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2. ~ 6. (생략)	제4조(결격사유) ----- ----- ----- -----. 1. <u>피성년후견인</u> 2. ~ 6. (현행과 같음)

나. 관계기관·단체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약 제조업자 등은 전문지식과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피한정후견인 결격 조항의 삭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2) 농약 제조·수입·원제업 및 판매업 관련 단체 의견

(사)한국작물보호협회(제조·수입·원제업), 농협(판매업)에서도 농약은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므로 피한정후견인이 제조·수입·원제업을 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다. 검토의견

1) 사전검증 및 사후퇴출 규정 여부

현행 「농약관리법」 제3조에 따르면, 제조업·원제업⁶⁾·수입업 및 판매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인력·시설·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농림부령에 따른 인력기준은 학력·자격·경력을 갖춘 검사책임자를 1인 둘 것을 규정한 것일 뿐, 해당 농약제조업자 등에 대한 사전적 검증절차로서의 자격기준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다만, 같은 법 제7조는 등록취소에 관한 규정을 두어 ① 제8조·제16조·제17조에 따른 제조품목·원재·수입농약 등록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제14조에 따른 등록취소·제한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15조에 따른 수출입의 금지·제한내용이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와 ④ 제20조에 따른 표시에 관한 사항 ⑤ 제21조에 따른 제조·수입·보관·진열·판매의 금지사항 ⑥ 제22조에 따른 허위광고 금지사항 ⑦ 제23조에 따른 농약안전사용기준·취급제한기준의 준수 의무 및 ⑧ 제24조에 따른 검사의무 ⑨ 제25조에 따른 보고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퇴출의 절차는 두고 있어, 농약제조업·원제업·수입업 및 판매업자에 대한 퇴출절차는 두고 있음.

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원제(原劑)”란 농약의 유효성분이 농축되어 있는 물질을 말한다.

5. “원제업(原劑業)”이란 국내에서 원제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 관련규정

「농약관리법」

제3조(영업의 등록 등) ① 제조업·원제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소마다 판매관리인을 지정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④ (생략)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원제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 중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취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7조(등록의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2·제13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1의2.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제6

※ **관련규정**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였을 때에는 제외한다.

2. 제8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약등 또는 원제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경우

3.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제8조의2제1항 후단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이나 제조·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회수·폐기명령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4. 제15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출입의 금지·제한내용이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의2. 제17조제4항 후단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6.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농약등 또는 원제를 제조·생산·수입·보관·진열 또는 판매한 경우

7. 제22조를 위반하여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를 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광고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광고를 한 경우

8.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을 위반하여 농약등을 취급한 경우

9. 제24조에 따라 검사한 농약등의 품질이 불량하다고 밝혀진 경우 또는 자체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0. 제24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시료(試料) 또는 시험용 제품의 수거(收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1. 제24조제5항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수거 또는 폐기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2. 제25조에 따른 시설 등의 보완명령을 위반하거나 농약등 또는 원제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14.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15.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도록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2·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1의2.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범인의 임원 중 제4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였을 때에는 제외한다.
 2. 제1항제6호·제7호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을 위반하여 농약등을 취급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5.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营业을 한 경우
 6. 등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록營業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③ (생략)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소·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유사입법례

농약 제조업자 등 유사한 직역으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사용업 포함)⁷⁾가 있음.

7)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8. “유해화학물질 영업”이란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에 대한 영업을 말한다.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유해화학물질 영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2.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3.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하는 영업
4.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하는 영업
5.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洗滌)·도장(塗裝)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등록의 결격사유에는 「농약관리법」과 같이 결격사유에 피한정후견인이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유사입법례

「화학물질관리법」

제30조(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취소된 해당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경우에 한정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다만, 2024. 7. 24. 정부가 제출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02189호)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를 삭제하는 것으로 정부안이 제출된 바 있음.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30조의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자는 금지물질⁸⁾을 취급할 수 없는 반면, 농약 제조업 등의 영업자는 금지물질이 포함된 농약 원제를 취급하고 있어 「화학물질관리법」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추가로 제시하였음.

8)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정의) 5. “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3) 공익관련성 등

농약 제조업자 등의 업무는 독성물질인 농약을 다량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작은 부주의로 대형 사고 및 범죄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농약 취급상의 부주의로 먹거리인 농산물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으며, 일반 국민의 건강상 재산상 손실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동물보호법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현행법은 맹견⁹⁾사육허가의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과 함께 피한정후견인을 포함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 중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9조(맹견사육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8조에 따른 맹견사육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생략) 2. <u>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3. ~ 5. (생략)	제19조(맹견사육허가의 결격사유) --- ----- ----- ----- 1. (현행과 같음) 2. <u>피성년후견인</u> 3. ~ 5. (현행과 같음)

나. 관계기관·단체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의 사고 가능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맹견의 안전한 사육을 위해서는 높은 인지능력 및 판단력이 요구되므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삭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9)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맹견”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나. 검토의견

1) 사전검증 및 사후퇴출 규정 여부

현행 「동물보호법」 제18조는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맹견등록, 보험가입 및 중성화수술 등의 조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19조에서는 허가신청자가 ① 미성년자 ② 피성년·피한정후견인 ③ 정신질환자·마약류중독자인 경우 ④ 이 법에 따른 동물학대금지, 동물관리, 맹견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실형을 받거나 ⑤ 집행유예기간에 있는 사람인 경우는 맹견사육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결격사유 규정을 두고 있어, 맹견사육자격에 대한 검증기준을 정하고 있음.

한편 같은 법 제20조에는 맹견사육허가의 철회 규정을 두어 맹견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을 하지 아니한 경우, 교육이수명령 및 맹견훈련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사육허가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후퇴출을 위한 절차도 일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아울러 제21조에서는 맹견의 소유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별도로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맹견사육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 관련규정

「동물보호법」

제18조(맹견사육허가 등) ①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제15조에 따른 등록을 할 것
2. 제23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할 것
3. 중성화(中性化) 수술을 할 것. 다만, 맹견의 월령이 8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발육상태 등으로 인하여 중성화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중성화 수술을 한 후 그 증명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공동으로 맹견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맹견사육허가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맹견사육허가를 하기 전에 제26조에 따른 기질평가위원회가 시행하는 기질평가를 거쳐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맹견의 사육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맹견사육허가를 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맹견에 대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맹견의 인도적인 처리는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을 준용한다.
- ⑥ 시·도지사는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한 경우 공동 신청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이수 또는 허가대상 맹견의 훈련을 명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맹견사육허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맹견사육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8조에 따른 맹견사육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맹견을 사육하는 것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0조·제16조·제21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

※ 관련규정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10조·제16조·제21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20조(맹견사육허가의 철회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맹견사육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의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하여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규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중성화 수술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제6항에 따른 교육이수명령 또는 허가대상 맹견의 훈련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철회하는 경우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맹견에 대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을 준용한다.

제21조(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제18조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의 맹견은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은 맹견의 안전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공익관련성 여부

맹견사육허가제도의 도입 취지(2024. 4. 27.부터 시행)는 맹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개물림에 의한 사람이나 동물의 사망·상해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음.

【개물림 사고 발생 현황】

(단위: 마리)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2,154	2,114	2,197	2,216	2,23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동물복지정책과, 24. 9. 22. 제출

맹견은 단기간에 치명적인 생명·신체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마개 등 안전장비의 착용, 맹견의 신체적 신호를 인지하고 제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삭제에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수의사법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현행법은 수의사의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과 함께 피한정후견인을 포함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 중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의사가 될 수 없다.	제5조(결격사유)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2. <u>피성년후견인</u>
3. 4. (생략)	3. 4. (현행과 같음)

나. 관계기관·단체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는 동물복지 및 국민건강과 관련한 민감한 업무를 수행하고 독자적인 판단능력과 고도의 사무처리 능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해 수의사의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 삭제에 대하여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2) 수의사회 등 관련 단체

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병원 협회 등은 별도 의견을 제출한 바 없음.

다. 검토의견

1) 사전검증 및 사후퇴출 규정 여부

현행 「수의사법」 제4조는 수의사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수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수의학사 학위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5조는 정신질환자, 마약 등 중독자, 피성년·피한정후견인,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등을 수의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함에 따라, 사전 자격검증 절차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됨.

한편, 같은 법 제32조는 수의사 면허취소·정지에 관한 규정을 두어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제30조에 따른 지도,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과잉진료 및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후 퇴출절차를 일부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관련규정

「수의사법」

제4조(면허) 수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의사가 될 수 없다.

※ 관련규정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마약, 대마(大麻),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 중독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이 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동물보호법」, 「의료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제8조(수의사 국가시험) ① 수의사 국가시험은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수의사 국가시험은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수의학과 수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공중위생에 관한 지식 및 기능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다.

④ 수의사 국가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응시자격) ①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을 졸업하고 수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졸업하여 수의학사 학위를 받을 사람을 포함한다.
2. 외국에서 제1호 전단에 해당하는 학교(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그 국가의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② 제1항제1호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기간에 수의학사 학위를 받지 못하면 처음부터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32조(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 관련규정

2. 제2항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수의업무를 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3회 이상 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을 때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진료기술상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였을 때
 2.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였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4. 임상수의학적(臨床獸醫學的)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하였을 때
 5. 학위 수여 사실을 거짓으로 공표하였을 때
 6. 과잉진료행위나 그 밖에 동물병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7.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③ · ④ (생략)

2) 유사입법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및 약사·한약사의 경우에도 관련 법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결격대상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유사입법례】

구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피한정 후견인 결격사유	○	○	○	○	○	○	○

※ 유사입법례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3.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약사법」

제5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다.

2.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3) 공익관련성

수의사는 인수공통전염병을 포함한 동물의 질병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동물용 의약품, 인체용 전문의약품 및 마약류 등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동물복지와 국민건강과 관련한 민감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삭제에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6) 식물방역법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현행법은 수출입목재 열처리업¹⁰⁾의 등록의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과 함께 피한정후견인을 포함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 중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0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u>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2. ~ 5. (생략)	제40조의2(결격사유) ----- ----- ----- -----. <u>1. 피성년후견인</u> 2. ~ 5. (현행과 같음)

나 관계부처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출입목재 열처리업은 수출입 목재 및 물품의 포장재에 국제식물보호협약에서 정한 기준 또는 수입국이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소독처리하는 등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주의가 요구되는 바, 해당 직역의 결격사유에 피한정후견인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2) 관련 협회

10) 수출 또는 수입되는 목재 및 물품의 목재포장재에 붙어있는 병해충을 열을 이용하여 구제하는 업

(사)한국수출입목재열처리협회는 수출입목재 열처리업은 수출입 목재 및 물품의 포장재에 국제식물보호협약에서 정한 기준 또는 수입국이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소독처리하는 등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주의가 요구되며, 부적합한 목재 포장재 사용이 상대국에 적발될 경우 수출입 목재 열처리업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결격 사유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다. 검토의견

1) 사전검증 및 사후퇴출 규정 여부

현행 「식물방역법」 제40조는 수출입목재 열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농림부령에 따른 인력기준은 특정 자격·경력을 갖추고 열처리 기술 교육을 이수한 인력을 1명 이상 둘 것을 규정한 것일 뿐, 해당 수출입목재 열처리업자 등에 대한 사전적 검증절차로서의 자격기준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한편, 같은 법 제41조는 등록취소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시정명령을 위반하거나, 3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는 등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일부 퇴출의 절차는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관련규정

「식물방역법」

제40조(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 등) ① 수출 또는 수입되는 목재 및 물품의 목재포장재에 붙어있는 병해충을 열을 이용하여 구제하는 업(이하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열처리를 하고 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는 열처리기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⑤ 그 밖에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41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40조의2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41조(등록취소 등) ①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제40조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하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을 한 경우
2. 1년 이상营业을 하지 아니한 경우

※ 관련규정

3. 제40조제3항에 따른 열처리의 기준 및 마크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40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제40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0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였을 때에는 제외한다.
7.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과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식품방역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준수사항 등) ① 법 제40조제4항에서 “열처리기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6조제1항의 열처리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열처리를 하지 아니한 목재 포장재에는 소독처리 마크를 표시하지 말 것
2. 소독처리 마크를 사용하기 전에 그 마크표시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나 검역본부장이 지정한 수출입목재열처리업 관련 단체 (이하 “열처리협회”라 한다)에 제출할 것
3. 소독처리 마크를 대여하지 않을 것
4. 소독처리 마크를 폐기할 경우에는 그 마크표시를 제출한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나 열처리협회에 알릴 것
5. 열처리 작업별 열처리 결과를 1년 이상 보관(정보시스템을 통한 보관을 포함한다)할 것
6. 소독처리 마크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동일한 번호의 소독처리 마크를 2개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
7. 수출입목재열처리업에 종사하는 자는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할 것
8. 소독처리 마크를 다시 제작하는 경우 새로운 일련번호를 사용할 것

2) 공익관련성 여부

수출입목재 열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식물검역기관에 등록된 시설·장비의 성능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소독기준에 따른 소독처리 및 엄격한 사후관리를 하는 수출입목재 열처리와 관련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주의가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

또한 부적합한 목재를 수출할 경우 수출 물품에 대한 통관 지연 등 불합격 조치로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가 검역 신뢰도를 저하시킬수 있고, 부실소독으로 인한 외래병해충 국내 유입시 우리농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7)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현행법은 ①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의 결격사유로 해당 법인 임원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와 함께 피한정후견인인 경우를 포함하고 있고, ② 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도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을 포함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 중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의5(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생략) 2. 임원(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회사 또는 법인 <u>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나. ~ 라. (생략)	제5조의5(결격사유) ----- ----- -----. 1. (현행과 같음) 2. ----- ----- <u>가. 피성년후견인</u> 나. ~ 라. (현행과 같음)
제2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u>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u>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 4. (생략)	제21조(결격사유) ----- ----- -----. 1. <u>피성년후견인</u> ----- ----- ----- 2. ~ 4. (현행과 같음)

나. 관계기관·단체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축산계열화사업자 등록은 허용하되,

비밀엄수와 명확한 판단력이 요구되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엄격한 자격 관리를 위하여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는 존속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생산자단체

(사)한국육계협회, (사)대한양계협회, (사)한국오리협회 등 생산자단체도 계열화사업자 등록은 피한정후견인을 허용하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다. 검토의견

1) 축산계열화사업자 임원

① 사전검증 및 사후퇴출 규정 여부

현행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르면 축산계열화사업을 영위하려는 법인 등은 고정사업장 등의 요건을 갖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조의5에 따르면 해당 법인의 임원이 피한정후견인 등일 경우에는 축산계열화 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은 축산계열회사업자의 임원선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르면 축산계열화사업자는 민법상 법인이나 상법상 회사 등에 해당해야 하고,

법인·회사의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해임되는 등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민법」 제40조·제43조, 「상법」 제382조·제385조) 해당 절차로 임원의 사전 직무수행능력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관련규정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3(계열화사업의 등록) ① 계열화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상법」에 따른 회사

나. 「민법」에 따른 법인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2. 고정사업장을 갖출 것

②·③ (생략)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 관련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생략)

제385조(해임) 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9조에서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의5제2호에서 “이법을 위반하여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임원의 결격사유로 같은 법 제5조의6에 따른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 등 간접적인 사후퇴출절차가 마련된 것으로 보임.

※ 관련규정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5(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5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임원(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회사 또는 법인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관련규정

다.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9조(준수사항) ① 계열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생의 관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를 공급하거나 계약농가로부터 가축 또는 축산물을 출하받아 계약농가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

2. 제2조제7호에 따른 농가지급금,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금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 또는 정산하여 계약농가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계열화사업 계약 관련 부당한 요구, 계약의 변경 또는 불이행으로 계약농가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행위로서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 상생의 관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공익관련성 여부

축산계열화사업자 임원의 직무성격에 비추어 볼 때,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할 때 자격요건 등을 보완하거나 대체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해야 할 정도로 공적 개입의 필요성이 큰 직무로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음.

2)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

① 사전검증 및 사후퇴출 규정 여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축산계열화사업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계약, 비용 지급,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등에 관한 분쟁조정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정위원회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개요】

명칭	·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심의위원회
설치근거 및 시행일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6조 (‘13.2.23 시행)		
설치목적	·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의 분쟁조정		
기 능	· 계약서(법 제7조), 사육경비 등(제8조), 준수사항(제9조) 및 위원장이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계열화사업자 또는 계약농가가 계열화협의회에서 자율적인 사전 조정 결과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항 및 제25조 제4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사무를 관할 * 분쟁당사자는 쌍방이 합의한 경우와 계열화협의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위 원현황(총 9명)	· 생산자단체 등(6), 교육인(1), 전문직업인(1), 공무원(1) * 대한한돈협회장(손세희), 대한양계협회장(오세진), 한국오리협회장(박하담), 한국육계협회장(김상근), 선진한마을대표이사(권혁만), 주원산오리대표이사(이우진), 건국대학교 교수(김민경), 법무법인 자우 변호사(정수경), 축산경영과장(이연섭)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 24.9.22.제출

현행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농식품부·공정위 4급이상 공무원, 그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었던 사람, 판사·검사·변호사, 법률 등 분야 전공 이후 7년이상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농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두고 있어, 그 능력을 사전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 의사에 반하여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후퇴출 수단도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관련규정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6조(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①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가축의 종류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 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에 따른 계약서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비용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

※ 관련규정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공정거래위원회에 속하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공정거래 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법률·경제·경영·소비자·축산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7년 이상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③ 조정위원회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사람

② 유사입법례

유사입법례를 보면 21개의 조정위원회 중 3개를 제외하고는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를 두고 있지 않음.

【분쟁조정위원회별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 여부】

연번	위원회명	근거법률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여부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제40조	×
2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34조	×
3	우체국 보험 분쟁조정위원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51조	×
4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
5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제70조의2 피한정후견인 포함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3조	×
7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
8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	×
9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
10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농약관리법 제23조의4	×
11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1조 피한정후견인 포함
12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	×
13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방송법 제35조의3	×
14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	×
15	건강보험 분쟁 조정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

연번	위원회명	근거법률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여부
16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0조의3	×
17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
18	중소기업 기술 분쟁 조정·중재위원회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
19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발명진흥법 제41조	×
20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 조정위원회	지방자치법 제166조	×
21	중앙환경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	제9조 피한정후견인 포함 단, 피한정후견인 제외 정부개정안 (’24.7)제출

아울러, 정부가 2024.7.24. 제출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02189호)에서도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를 삭제하는 것으로 정부안이 제출된 바 있음을 참고하여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관련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70조의2(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3. ~ 5. (생략) 「환경분쟁조정법」

※ 관련규정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 3. (생략)

③ 공익관련성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작성된 분쟁조정조서의 효력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등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업무가 공정성과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라는 점은 고려될 필요가 있음.

다만, 사전검증 및 사후퇴출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유사입법례에 따라 다른 조정위원회도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대다수임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결격사유나 자격요건을 추가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음.

문 의 처

02)6788-5417